

용어해설

김 일 영 : 지문위원

○ ISO 9000 시리즈(Se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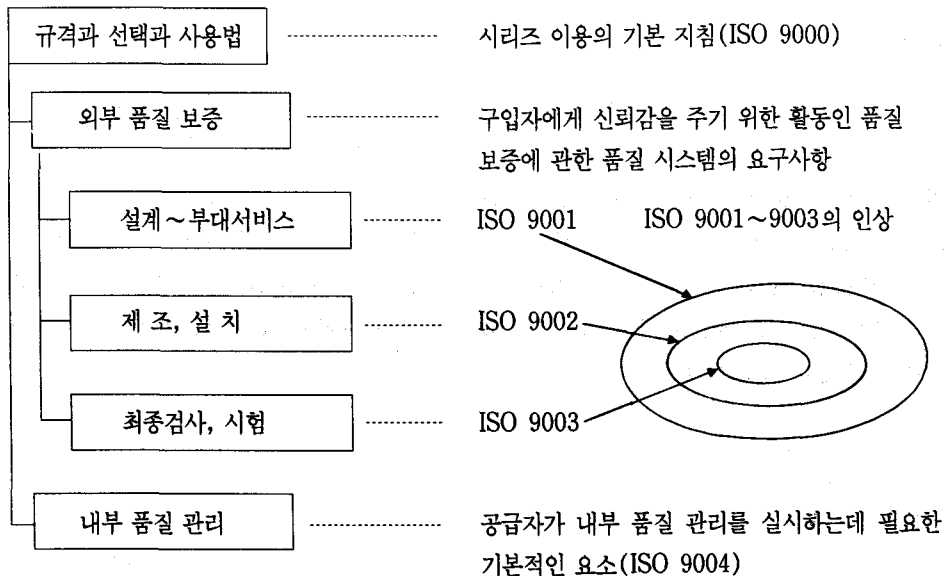
1987년에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품질 관리와 품질 보증을 위한 국제규격이다. 이것은 구입자 측면에서 볼때 제품 품질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급자가 제조하는 과정 즉, 공정과정에서 품질을 확실하게 조성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품질 관리에 관한 요구사항을 규격으로 하여 정해진 것이다.

○ ISO 9000 시리즈의 구성

ISO 9000 시리즈는 9000과 9001에서 9004까

지의 다섯 가지의 규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9000은 시리즈의 기본 지침, 즉 9001에서 9004의 선택과 적용 방법에 대하여 설명 기술한 것으로, 계약에 의해 구매 조달을 할때 구입자측이 공급자측에 요구하는 품질 시스템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은 9001에서 9003의 세 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내용은 설계, 개발에서 제품 설치, 애프터서비스까지를 대상으로 한 ISO 9001, 제조에서 설치까지의 ISO 9002, 제품의 최종 검사 및 시험은 ISO 9003이며, 이밖에 공급자가 내부 품질 관리를 실시하는데 기본적인 요소들을 정리한 것이

〈그림 1〉 ISO 9000시리즈의 구성



ISO 9004이다.

ISO 9000시리즈의 구성을 표시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 ISO의 품질 시스템 심사 등록 제도

이 제도는 기업, 공장 등의 품질 시스템에 대하여 ISO 9001~9003의 적합성을 계약에 의하여 제3자의 심사 등록 기관이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심사 등록 기관(복수)외에 심사 등록 기관의 인정, 심사원의 평가, 등록 등을 수행하는 인정기관(원칙적으로 한 국가에 한 기관)과 심사원 연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심사 등록 기관이 실행하는 심사에서 규격의 적합성이 증명되면 기업의 광고, 홍보용 문서 등에 심사 등록 기관의 인증 마크를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제품 자체에 인증 마크를 표시할 수는 없다.

○ 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국제 표준화 기구

ISO는 물질과 서비스의 국제 교류를 용이하게 하고 지식, 과학 기술, 경제 활동 분야 등에서 국제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세계 표준을 개발, 제정하는 기관으로서, 1974년에 창립되었다. ISO조직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중앙 사무국에 22개국 1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국제 규격의 출판 판매와 각종 위원회의 결정 사항등 국제 표준화 활동을 각국에 전하고 있다. ISO의 참가는 가맹국의 한 개 조직만이 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그 회원 자격을 가진 회원 단체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표준화 조직이다. 1993년 1월 현재 정규

회원 71개국, 통신 회원 21개국이며, 우리나라는 공업 진흥청 표준국이 정규 회원으로 되어 있다.

○ ISONET : ISO information network : ISO 정보 네트워크

ISO 회원의 정보 센터와 중앙 사무국내의 ISO/IEC 정보 센터와 맺어진 정보 시스템에 의해 규격 및 동일 문서에 대해 정보의 교환을 국내외적으로 조정 체계화하고 있으며, ISONET의 최고 집행 기관으로 ISONET 운영위원회(ISONET Management Board)가 있으며, 의장 및 회원은 ISONET가 임명한다. 다만, 의장의 임명에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 ISO/IEC JTPC : ISO/IEC Joint Technical Programming Committee : ISO/IEC 공동 전문 업무 계획 위원회

ISO와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국제 전기 표준 회의)는 업무 조정의 목적으로 1984년에 공동 업무 계획위원회를 만들어 어느 한쪽이 공동 계획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ISO/IEC JPCG : ISO/IEC Joint President's Coordination Group : ISO/IEC 공동 의장 조성 그룹

1992년 설립. ISO와 IEC의 일관된 방침과 협력으로 강제성이 아닌 국제적 규격 시스템을 강화하여 선진화 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 기관에 공통되는 특정한 주요 문제점을 협의한다.